

<p>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4장 제11절의 제목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”을 “서울역사박물관”으로 한다.</p> <p>제71조 제1항중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”을 “서울역사박물관”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사업소 명칭변경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)</p> <p>①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립박물관장의 소관사무는 서울역사박물관장이 승계한다.</p> <p>②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소속 공무원은 서울역사박물관소속공무원으로 본다.</p> <p>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명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”를 “서울역사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”로 하고, 동조례 제1조중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”을 “서울역사박물관”으로,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”를 “서울역사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”로 한다.</p> <p>②서울특별시립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명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”를 “서울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”로 하고, 동조례 제1조중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”을 “서울역사박물관”으로 하며, 제4조제1항중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”를 “서울역사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”로 하고, 제8조제2항중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장”을 “서울역사박물관장”으로 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7조 중 “면제하거나”를 “면제하고”로 하고, 동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3.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기념관을 관련단체에 위탁하는 경우(수입이 적어 운영이 적</p>	<p>자인 시설에 한한다)</p> <p>제2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⑦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.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4.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<p>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최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③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, 동조 제5항 본문중 “제4항”을 “제3항”으로, 동항 단서중 “제3항 및 제4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며, 동조제6항중 “제4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고, 동조제7항중 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 중 공사비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”를 “다음중 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에 대하여는 급수공사비의 50%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감면해 주고,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 중 공사비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”로 하며, 동조동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면적 45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물 2. 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」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작은 구경의 인입급수관으로 수도물을 공급받는 주택 3. 공동급수장치를 이용하는 주택 중 전용급
--	--